

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84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2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근거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.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사기·부실시공·</u> <u>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</u> <u>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</u> <u>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	<u><삭제></u>

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[1991. 3. 21] 조례 제63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법이라 한다)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(이하 부담금이라 한다)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.
2.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3. 직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
4.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

제3조(부담금 징수)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,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

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.

⑤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.

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 ①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.

1.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

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2.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

3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
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.

제5조(복구공사의 시행)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. 다만,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.

제6조(손괴자 확인의뢰)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손괴자가 불명일 때는 자체 복구한다.

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사기, 부실시공,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1991. 3. 21 조례 제63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.